

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및 의견제출

안내 공시송달 공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(2022. 10.)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,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1. 2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(2022. 10.)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4. 11. 20. ~ 2024. 12. 4.(15일간)
5. 문의사항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(031-828-0975)

[붙임]

공시 송달자명단

(공고기간 : 2024. 11. 20. ~ 2024. 12. 4.)

연 번	사업장 명	사업장 관리 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주식회사 온○○○	623-81-○ ○○○○	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환수사유: 최소고용유지기간 중 고용조건 변동 (정규직→프리랜서)○ 부정이익등 (부정이익 가액+이자) : 1,842,000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달('24.3월)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며, 부정청구 최종 처분일에 따라 이자는 달라질 수 있음** 부정이익 가액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 2항에 따른 이자율(1천분의35)을 곱하여 산정함(2024. 3. 22. 시행)○ 체재부가금 : 면제(자진신고서 제출)○ 참여제한 : 1년	최소고용유지기간 중 고용조건 변동 (정규직→프리랜서)	주소 불명	경기도 의정부시 이하생략